|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2015년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55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8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09차 회의에서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에 의해 개정, 해당 개정안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사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이 규정에서 민간금전대차라 함은 자연인, 법인 및 비(非)법인조직 간의 자금융통 행위를 지칭한다.   금융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어 대출 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금융기관과 그 지사의 대출 등 관련 금융 업무로 인한 분쟁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대여자는 인민법원에 민간금전대차 소송 제기 시 금전대차증서(借據)•금전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 또는 금전대차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금전대차증서(借據)•금전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에 채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적 근거가 있는 항변을 하고 인미법원이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소송 각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1. 대차 쌍방이 계약이행지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하고 사후에 보충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하였으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서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을 수령한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2.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오로지 차입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여자가 오로지 보증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일반보증을 제공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오로지 보증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여야 한다. 대여자가 오로지 차입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입안(立案) 후 민간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소송 각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혐의 관련 단서•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입안(立案)을 하지 않거나, 입안(立案) 후 사건을 취소하거나, 검찰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1. 인민법원이 입안(立案)을 한 후에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으나 동일한 사실이 아닌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관련 단서•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아울러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관련 단서•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반드시 형사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해야 하고 해당 형사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中止)하여야 한다. 3. 차입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대여자가 담보인의 민사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4.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계약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차입자가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은행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자금이 차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 차입자가 법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8. 대여자가 특정 자금계좌의 지배권을 차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차입자가 해당 계좌의 실제적 지배권을 취득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9. 대여자와 차입자가 기타 방식으로 대여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법인 간, 비(非)법인조직 간 또는 법인과 비(非)법인조직 간에 생산•경영 수요로 인해 체결된 민간금전대차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와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응당히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12.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이 본 업체•기관 내부에서 자금차입 형식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본 업체•기관의 생산•경영에 사용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와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13.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금전대차 행위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의 구성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간금전대차계약이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되지는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와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금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차입자 또는 대여자의 금전대차 행위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의 구성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담보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계약 및 담보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담보인의 민사책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계약 무효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불법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획득한 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3. 기타 영리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본 업체•기관의 종업원으로부터 자금 모집, 불법적으로 대중의 예금을 유치하는 등 방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4. 법에 따라 대부업 자격을 획득하지 아니한 대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의 불특정 대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5. 차입자가 불법•범죄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임을 대여자가 사전에 이미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6.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공서양속(公序兩俗)에 위배되는 경우 8. 원고가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에 의거하여 제기한 민간금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기초적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항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였고 증거를 제출하여 채권 분쟁이 민간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명된 사건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기초적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화해 또는 청산을 통해 달성한 채권채무협의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원고가 오로지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만을 근거로 제기한 민간금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차입금을 이미 상환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경우, 금전대차 관계의 존속에 대한 거증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금전대차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대차액수, 금전 교부, 당사자의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 간의 거래방식•거래관습, 당사자의 재산 변동 상황, 증인의 증언 등 사실•요인과 결부시켜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원고가 오로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증빙만을 근거로 제기한 민간금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계좌이체가 쌍방 간의 기존 대여금 또는 기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경우, 금전대차 관계의 성립에 대한 거증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기존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금전대차 행위, 대차액수, 지불방식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 심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금전대차 발생의 원인, 시간, 장소, 금전 출처, 교부방식, 금전의 행방 및 대차 쌍방의 관계와 경제상태 등 사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위 민사소송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대여자에게 자금대여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5. 대여자가 소송 제기 시 의거한 사실과 이유가 상리(常理)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6. 대여자가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채권증빙의 위조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7. 쌍방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복수의 민간금전대차 소송에 참가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8.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 및 소송 참가를 거부하고, 금전대차 사실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의 앞뒤가 모순되는 경우 9.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에 대해 쌍방 당사자 사이에 여하한 쟁의가 없거나 쌍방 당사자의 주장•항변이 상리(常理)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10. 차입자의 배우자 또는 동업자, 소외인(案外人)의 기타 채권자가 사실적 근거가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1. 당사자가 기타 분쟁에서 재산을 저가양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12. 당사자가 부정당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13. 허위 민간금전대차 소송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타 상황 14. 허위 민간금전대차 소송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다.   소송참가인 또는 제3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거나 허위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벌금•구류(拘留)에 처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업체•기관이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거나 허위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업체•기관에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의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벌금•구류(拘留)에 처할 수도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1. 타인이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 또는 금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으나 그의 보증인 신분 또는 보증책임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사실을 통해 그가 보증인임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여자가 그의 보증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2. 대차 쌍방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오로지 중개 서비스만 제공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웹 페이지, 광고 또는 기타 매개체를 통해 대출 담보의 제공을 명시하였거나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대출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대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의 책임자가 업체•기관의 명의로 대여자와 민감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차입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대여자가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를 공동피고 또는 제3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법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의 책임자가 개인 명의로 대여자와 민간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금이 업체•기관의 생산경영에 사용된 상태에서 대여자가 업체•기관과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계약에 대한 담보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환기일 도래 후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소송청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허용하여야 한다.   민간금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 내린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차입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는 매매계약 목적물의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대금과 미상환 원금•이자의 차액에 대해 차입자 또는 대여자는 반환 또는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1. 대차 쌍방이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이자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를 제외하고, 대차 쌍방의 이자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계약의 내용과 결부시켜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방식, 거래관습, 대출우대금리(LPR) 등 요인에 근거하여 이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대여자가 차입자의 계약 약정 금리에 따른 이자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이 약정한 금리가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1년기 대출우대금리’라 함은, 전국은행간단기자금거래센터가 중국인민은행의 수권하에 2019년 8월 20일부터 매월 발표하는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지칭한다.   1.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에 기재된 대차액수는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한다. 사전에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로 대여한 액수를 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대차 쌍방이 전기(前期) 대여금의 원금•이자를 결산한 후 이자를 후기(後期) 대여금의 원금에 산입하여 채권증빙을 다시 발행하였고, 전기(前期)의 금리가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발행된 채권증빙에 기재된 액수는 후기(後期) 대여금의 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과분 이자는 후기(後期) 대여금의 원금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에 따라 계산할 때, 차입자가 대여기간 만료 후 응당히 지불하여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최초의 대여금 원금과 최초의 대여금 원금을 기수(基數)로 하고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에 따라 계산한 전체 대여기간의 이자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대차 싸방이 연체금리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되,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연체금리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대여기간 내 금리와 연체금리를 모두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차입자가 상환 연체에 대한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대여자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대여기간 내 금리만 약정하고 연체금리를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차입자가 대여기간 내 금리에 따라 자금 점용기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대여자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3. 대여자와 차입자가 연체금리도 약정하였고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도 약정한 경우 대여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모두 주장할 수도 있다. 단, 합계 액수가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4. 차입자는 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입자가 차입금의 조기상환과 더불어 실제 차입기간에 따른 이자 산정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신규로 접수하는 1심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금전대차 행위가 2019년 8월 20일 전에 발생한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참조하여 보호받는 금리 상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상충될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  **若干问题的规定**  （2015年6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55次会议通过，根据2020年8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09次会议《关于修改〈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修正，该修正自2020年8月20日起施行）  为正确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等相关法律之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本规定所称的民间借贷，是指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之间进行资金融通的行为。  　　经金融监管部门批准设立的从事贷款业务的金融机构及其分支机构，因发放贷款等相关金融业务引发的纠纷，不适用本规定。  **第二条** 出借人向人民法院提起民间借贷诉讼时，应当提供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以及其他能够证明借贷法律关系存在的证据。  　　当事人持有的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没有载明债权人，持有债权凭证的当事人提起民间借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被告对原告的债权人资格提出有事实依据的抗辩，人民法院经审查认为原告不具有债权人资格的，裁定驳回起诉。  **第三条** 借贷双方就合同履行地未约定或者约定不明确，事后未达成补充协议，按照合同相关条款或者交易习惯仍不能确定的，以接受货币一方所在地为合同履行地。  **第四条** 保证人为借款人提供连带责任保证，出借人仅起诉借款人的，人民法院可以不追加保证人为共同被告；出借人仅起诉保证人的，人民法院可以追加借款人为共同被告。  　　保证人为借款人提供一般保证，出借人仅起诉保证人的，人民法院应当追加借款人为共同被告；出借人仅起诉借款人的，人民法院可以不追加保证人为共同被告。  **第五条** 人民法院立案后，发现民间借贷行为本身涉嫌非法集资等犯罪的，应当裁定驳回起诉，并将涉嫌非法集资等犯罪的线索、材料移送公安或者检察机关。  　　公安或者检察机关不予立案，或者立案侦查后撤销案件，或者检察机关作出不起诉决定，或者经人民法院生效判决认定不构成非法集资等犯罪，当事人又以同一事实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六条** 人民法院立案后，发现与民间借贷纠纷案件虽有关联但不是同一事实的涉嫌非法集资等犯罪的线索、材料的，人民法院应当继续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并将涉嫌非法集资等犯罪的线索、材料移送公安或者检察机关。  **第七条** 民间借贷纠纷的基本案件事实必须以刑事案件的审理结果为依据，而该刑事案件尚未审结的，人民法院应当裁定中止诉讼。  **第八条** 借款人涉嫌犯罪或者生效判决认定其有罪，出借人起诉请求担保人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九条** 自然人之间的借款合同具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视为合同成立：  　　（一）以现金支付的，自借款人收到借款时；  　　（二）以银行转账、网上电子汇款等形式支付的，自资金到达借款人账户时；  　　（三）以票据交付的，自借款人依法取得票据权利时；  　　（四）出借人将特定资金账户支配权授权给借款人的，自借款人取得对该账户实际支配权时；  　　（五）出借人以与借款人约定的其他方式提供借款并实际履行完成时。  **第十条** 除自然人之间的借款合同外，当事人主张民间借贷合同自合同成立时生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当事人另有约定或者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十一条** 法人之间、非法人组织之间以及它们相互之间为生产、经营需要订立的民间借贷合同，除存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五十二条以及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情形外，当事人主张民间借贷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二条** 法人或者非法人组织在本单位内部通过借款形式向职工筹集资金，用于本单位生产、经营，且不存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五十二条以及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情形，当事人主张民间借贷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三条** 借款人或者出借人的借贷行为涉嫌犯罪，或者已经生效的裁判认定构成犯罪，当事人提起民事诉讼的，民间借贷合同并不当然无效。人民法院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五十二条以及本规定第十四条之规定，认定民间借贷合同的效力。  　　担保人以借款人或者出借人的借贷行为涉嫌犯罪或者已经生效的裁判认定构成犯罪为由，主张不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当依据民间借贷合同与担保合同的效力、当事人的过错程度，依法确定担保人的民事责任。  **第十四条** 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民间借贷合同无效：  　　（一）套取金融机构贷款转贷的；  　　（二）以向其他营利法人借贷、向本单位职工集资，或者以向公众非法吸收存款等方式取得的资金转贷的；  　　（三）未依法取得放贷资格的出借人，以营利为目的向社会不特定对象提供借款的；  　　（四）出借人事先知道或者应当知道借款人借款用于违法犯罪活动仍然提供借款的；  　　（五）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的；  　　（六）违背公序良俗的。  **第十五条** 原告以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为依据提起民间借贷诉讼，被告依据基础法律关系提出抗辩或者反诉，并提供证据证明债权纠纷非民间借贷行为引起的，人民法院应当依据查明的案件事实，按照基础法律关系审理。  　　当事人通过调解、和解或者清算达成的债权债务协议，不适用前款规定。  **第十六条** 原告仅依据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提起民间借贷诉讼，被告抗辩已经偿还借款的，被告应当对其主张提供证据证明。被告提供相应证据证明其主张后，原告仍应就借贷关系的存续承担举证责任。  　　被告抗辩借贷行为尚未实际发生并能作出合理说明的，人民法院应当结合借贷金额、款项交付、当事人的经济能力、当地或者当事人之间的交易方式、交易习惯、当事人财产变动情况以及证人证言等事实和因素，综合判断查证借贷事实是否发生。  **第十七条** 原告仅依据金融机构的转账凭证提起民间借贷诉讼，被告抗辩转账系偿还双方之前借款或者其他债务的，被告应当对其主张提供证据证明。被告提供相应证据证明其主张后，原告仍应就借贷关系的成立承担举证责任。  **第十八条** 依据《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一百七十四条第二款之规定，负有举证责任的原告无正当理由拒不到庭，经审查现有证据无法确认借贷行为、借贷金额、支付方式等案件主要事实的，人民法院对原告主张的事实不予认定。  **第十九条** 人民法院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时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严格审查借贷发生的原因、时间、地点、款项来源、交付方式、款项流向以及借贷双方的关系、经济状况等事实，综合判断是否属于虚假民事诉讼：  　　（一）出借人明显不具备出借能力；  　　（二）出借人起诉所依据的事实和理由明显不符合常理；  　　（三）出借人不能提交债权凭证或者提交的债权凭证存在伪造的可能；  　　（四）当事人双方在一定期限内多次参加民间借贷诉讼；  　　（五）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到庭参加诉讼，委托代理人对借贷事实陈述不清或者陈述前后矛盾；  　　（六）当事人双方对借贷事实的发生没有任何争议或者诉辩明显不符合常理；  　　（七）借款人的配偶或者合伙人、案外人的其他债权人提出有事实依据的异议；  　　（八）当事人在其他纠纷中存在低价转让财产的情形；  　　（九）当事人不正当放弃权利；  　　（十）其他可能存在虚假民间借贷诉讼的情形。  **第二十条** 经查明属于虚假民间借贷诉讼，原告申请撤诉的，人民法院不予准许，并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二条之规定，判决驳回其请求。  　　诉讼参与人或者其他人恶意制造、参与虚假诉讼，人民法院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第一百一十二条和第一百一十三条之规定，依法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应当移送有管辖权的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单位恶意制造、参与虚假诉讼的，人民法院应当对该单位进行罚款，并可以对其主要负责人或者直接责任人员予以罚款、拘留；构成犯罪的，应当移送有管辖权的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他人在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或者借款合同上签名或者盖章，但是未表明其保证人身份或者承担保证责任，或者通过其他事实不能推定其为保证人，出借人请求其承担保证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二条** 借贷双方通过网络贷款平台形成借贷关系，网络贷款平台的提供者仅提供媒介服务，当事人请求其承担担保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网络贷款平台的提供者通过网页、广告或者其他媒介明示或者有其他证据证明其为借贷提供担保，出借人请求网络贷款平台的提供者承担担保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三条** 法人的法定代表人或者非法人组织的负责人以单位名义与出借人签订民间借贷合同，有证据证明所借款项系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个人使用，出借人请求将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列为共同被告或者第三人的，人民法院应予准许。  　　法人的法定代表人或者非法人组织的负责人以个人名义与出借人订立民间借贷合同，所借款项用于单位生产经营，出借人请求单位与个人共同承担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四条** 当事人以订立买卖合同作为民间借贷合同的担保，借款到期后借款人不能还款，出借人请求履行买卖合同的，人民法院应当按照民间借贷法律关系审理。当事人根据法庭审理情况变更诉讼请求的，人民法院应当准许。  　　按照民间借贷法律关系审理作出的判决生效后，借款人不履行生效判决确定的金钱债务，出借人可以申请拍卖买卖合同标的物，以偿还债务。就拍卖所得的价款与应偿还借款本息之间的差额，借款人或者出借人有权主张返还或者补偿。  **第二十五条** 借贷双方没有约定利息，出借人主张支付利息的，人民法院不予支持。  　　自然人之间借贷对利息约定不明，出借人主张支付利息的，人民法院不予支持。除自然人之间借贷的外，借贷双方对借贷利息约定不明，出借人主张利息的，人民法院应当结合民间借贷合同的内容，并根据当地或者当事人的交易方式、交易习惯、市场报价利率等因素确定利息。  **第二十六条** 出借人请求借款人按照合同约定利率支付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是双方约定的利率超过合同成立时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四倍的除外。  　　前款所称“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是指中国人民银行授权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自2019年8月20日起每月发布的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  **第二十七条** 借据、收据、欠条等债权凭证载明的借款金额，一般认定为本金。预先在本金中扣除利息的，人民法院应当将实际出借的金额认定为本金。  **第二十八条** 借贷双方对前期借款本息结算后将利息计入后期借款本金并重新出具债权凭证，如果前期利率没有超过合同成立时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四倍，重新出具的债权凭证载明的金额可认定为后期借款本金。超过部分的利息，不应认定为后期借款本金。  　　按前款计算，借款人在借款期间届满后应当支付的本息之和，超过以最初借款本金与以最初借款本金为基数、以合同成立时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四倍计算的整个借款期间的利息之和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九条** 借贷双方对逾期利率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以不超过合同成立时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四倍为限。  　　未约定逾期利率或者约定不明的，人民法院可以区分不同情况处理：  　　（一）既未约定借期内利率，也未约定逾期利率，出借人主张借款人自逾期还款之日起承担逾期还款违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二）约定了借期内利率但是未约定逾期利率，出借人主张借款人自逾期还款之日起按照借期内利率支付资金占用期间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条** 出借人与借款人既约定了逾期利率，又约定了违约金或者其他费用，出借人可以选择主张逾期利息、违约金或者其他费用，也可以一并主张，但是总计超过合同成立时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四倍的部分，人民法院不予支持。  **第三十一条** 借款人可以提前偿还借款，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借款人提前偿还借款并主张按照实际借款期限计算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二条** 本规定施行后，人民法院新受理的一审民间借贷纠纷案件，适用本规定。  　　借贷行为发生在2019年8月20日之前的，可参照原告起诉时一年期贷款市场报价利率四倍确定受保护的利率上限。  　　本规定施行后，最高人民法院以前作出的相关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